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6-08-10

부 산 지 방 법 원

제 2 행 정 부

판 결

사 건	2015구합22937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유안타증권 주식회사
피 고	부산광역시 남구청장
변 론 종 결	2016. 6. 10.
판 결 선 고	2016. 6. 24.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4. 9. 19. 원고에 대하여 한 재산세 254,892,460원 및 지방교육세 39,816,010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6-08-10

가. 주식회사 무송종합엔지니어링은 2008. 6. 27. 원고를 포함한 대주단으로부터 자금을 대출받으면서 부산 남구 용호동 산 205 등 토지 134,637㎡(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자신을 위탁자 및 수익자로, 원고를 수탁자로 하는 부동산관리처분신탁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신탁을 원인으로 하여 원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나. 피고는 지방세법(2014. 1. 1. 법률 제12153호로 개정된 것) 제107조 제1항 제3호(이하 '이 사건 과세조항'이라 한다)에 따라 과세기준일 현재 이 사건 토지의 2014년도분 재산세 등의 납세의무자를 원고로 보아, 2014. 9. 18. 재산세 253,969,830원, 지방교육세 39,671,850원 합계 293,641,680원을 부과하고, 2014. 9. 24. 재산세 922,630원, 지방교육세 144,160원 합계 1,066,790원을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2014. 12. 18. 조세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5. 6. 9. 2014. 9. 18. 부과처분은 심판청구기간을 경과하여 제기하였다는 이유로 부적법 각하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결정을 하였다.

[인정사실]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개정 전 지방세법(2014. 1. 1. 법률 제121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7조 제2항 제5호는 신탁재산의 재산세 납세의무자를 위탁자로 규정하고 있었는데 법률의 개정으로 납세의무자가 수탁자로 변경되었다. 신탁재산의 납세의무자를 수탁자로 규정하는 이 사건 과세조항은 소급과세금지원칙 내지 신뢰보호원칙,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원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6-08-10

고의 재산권을 침해하므로 위헌 법률이고, 이에 근거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살피건대, 헌법재판소는 2016. 2. 25. 이 사건 과세조항이 과잉금지원칙에 위반하여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고, 개정법 시행 이전에 체결한 신탁계약에 의한 신탁재산에 대하여 종전규정을 적용하도록 하는 경과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한 부칙조항은 과세요건 완성 후에 새로운 입법으로 과세하거나 이미 성립한 납세의무를 가중한 것이 아니므로 소급입법금지원칙에 반하지 아니하고, 기존의 법적인 상태에 대한 신뢰를 헌법적으로 보호해주어야 할 것인지 여부가 문제되나, 신탁재산에 대한 재산세 징수의 용이성이라는 공익 등을 감안하면 신뢰보호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고(헌법재판소 2016. 2. 25. 선고 2015헌바127, 185, 241, 308, 345, 346, 347, 348, 350, 351(병합) 전원재판부 결정 참조), 위 헌법재판소 결정과 달리 이 사건 과세조항이 위헌이라고 볼 만한 사정이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6-08-10

재판장 판사 한영표

판사 신수빈

판사 신동웅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6-08-10

관련 법령

지방세법(2014. 1. 1. 법률 제12153호로 개정된 것)

제107조(납세의무자) 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각 호의 자를 납세의무자로 본다.

3. 「신탁법」에 따라 수탁자 명의로 등기·등록된 신탁재산의 경우: 위탁자별로 구분된 재산에 대해서는 그 수탁자. 이 경우 위탁자별로 구분된 재산에 대한 납세의무자는 각각 다른 납세의무자로 본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5. 삭제 <2014.1.1.>

제150조(납세의무자) 지방교육세의 납세의무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6. 재산세(제112조제1항제2호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재산세액은 제외한다)의 납세의무자

부칙(법률 제12153호, 2014. 1. 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2조제2항, 제103조의3제4항 및 제103조의20제2항의 개정규정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123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7조(신탁재산에 대한 재산세 납세의무자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전에 재산세 납세의무가 성립된 경우에는 제107조제2항제5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지방세법(2014. 1. 1. 법률 제121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7조(납세의무자) 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공유재산인 경우에는 그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지분의 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지분이 균등한 것으로 본다)에 대하여 그 지분권자를 납세의무자로 보며, 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를 경우에는 그 주택에 대한 산출세액을 제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의 시가표준액 비율로 안분계산한 부분에 대하여 그 소유자를 납세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6-08-10

의무자로 본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5. 「신탁법」에 따라 수탁자명의로 등기·등록된 신탁재산의 경우에는 위탁자(다만, 「주택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지역주택조합·직장주택조합이 조합원이 납부한 금전으로 매수하여 소유하고 있는 신탁재산의 경우에는 해당 지역주택조합·직장주택조합). 이 경우 수탁자(지역주택조합·직장주택조합의 경우에는 조합원)는 「지방세기본법」 제135조에 따른 납세관리인으로 본다.

끝.